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청주대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이하“공단”)는 충북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서는 충북지역의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해 위 공단과 청주대학교의 역할 및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공단과 청주대학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충북지역의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청년에게 특화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공단과 청주대학교는 업무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 미래 국가 발전 및 충북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
2. 국가·충북지역의 인력 수급 전망 및 실태 조사 분석 자료의 통계 자료 제공 및 이에 기반 한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노력
3.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4. 국가자격검정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문자격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노력
5.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해외 취업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6. 상기 이외 국가·충북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

제4조(업무협약의 이행) 공단과 청주대학교는 제3조의 업무협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협의를 따른다.

제5조(비밀 유지) 공단과 청주대학교는 본 약정 후 취득한 비밀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협약서의 효력) 본 업무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일방의 해약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지속된다. 또한, 업무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청주대학교가 별도로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업무협약 한 사항은 본 업무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기타) 공단과 청주대학교는 업무협약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양 기관이 1부 씩 보관한다.

2017년 6월 21일

청 주 대 학 교

총 장 정 성 봉

정 성 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이 재 길

이 재 길